

#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
----------	----

제출년월일 : 2018. 11. 2.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해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고,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 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함

## 2. 주요내용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4조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입법 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1호)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개정안이 아님

####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 4. 작성자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주사 권해주(02-3423-5862)